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본 설명서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령") 제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의3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혹은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이하 "상품")의 매매(영 제6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는 제외)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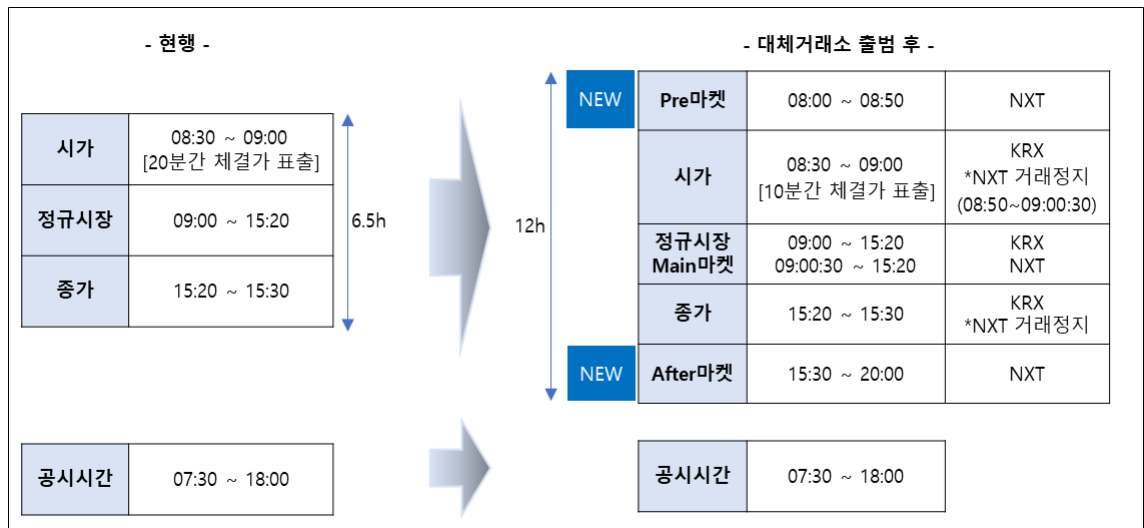
I. 복수시장 제도 안내

1. 개요

가. 대체거래소(ATS)

- 2025. 3. 4부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함에 따라 복수시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대체거래소(ATS)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으로서, 기존 정규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외에 주식 등 상장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 대체거래소(ATS)는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매매만 중개할 뿐, 상장심사 및 시장감시 등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 대체거래소(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 ※ NXT 정규시장에 제출된 호가는 세션(Pre, Main, After마켓)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 NXT After마켓 거래종목은 KRX시간외단일가시장(16:00~18:00) 거래가능종목에서 제외
- ※ KRX가 시장관리를 위해 주식시장 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는 경우 NXT 또한 즉시 해당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 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며, KRX가 거래를 재개하는 때에 NXT도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예시: KRX에서 CB(Circuit Breakers) 발동 시 NXT도 모든 종목 매매거래 중지)
- ※ 또한 상장법인의 중요내용 공시 등에 따라 KRX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NXT는 즉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KRX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때에 NXT도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 ※ KRX의 매매거래시간 외의 시간에 상장폐지사유 등 상장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의 보도 등이 있는 경우 NXT는 자체적으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법인의

공시 또는 KRX의 시장조치 등을 확인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다. 넥스트레이드(NXT) 거래대상종목

- 1)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중 넥스트레이드가 선정한 종목이 거래되며, 거래가능 종목에 관한 자세한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www.nextrad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25년 3월 출범 초기에는 시장참여자의 복수시장구조 적응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거래대상을 확대합니다.

구분	기준	종목 수		
		코스피	코스닥	계(누적)
1 st Week	일평균 체결건수 등 고려 선정	5	5	10
2 nd Week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50	50	110
3 rd Week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200	200	410
4 th Week	시가총액 상위 300종목 /거래대금 상위 300종목	300	300	약 800여 종목
	지수구성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	200	150	

- 3) 다음 종목은 거래대상 종목에서 제외합니다.

관리종목, 상장폐지 결정 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이상급등종목 등

II. 주요 용어의 정의

이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시장"은 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배분하기로 정한 하나 이상의 거래 집행시장으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또는 KRX라고 한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 또는 "NXT"라고 한다)를 포함합니다.
2. "최선집행기준"은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마련한 주문처리방법을 의미합니다.
3. "SOR"은 Smart Order Routing의 약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 위한 주문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4. "통합호가"는 복수시장 간 실시간으로 통합된 호가를 말합니다.
5. "주문유형"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ing주문)"은 통합호가창 내 기존에 등록된 호가 잔량을 이용해 즉시 체결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 나.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ing주문)"은 통합호가창에 새로운 호가를 등록하여 대기 물

량을 만드는 주문을 말합니다.

6.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 매매를 위해 통합호가창(Order Book)에서 제시된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공개된 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공개 호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7. "총금액"이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주문수량, 체결가격,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투자자가 수취하거나 지불해야하는 총비용 또는 총대가를 의미합니다.
8. "총비용"이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을 의미합니다.
9. "총대가"란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를 의미합니다.
10. "거래비용"이란 매매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 투자자가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납부하게 될 실제 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1. "매매체결가능성"이란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내용 중 "III.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2. 유안타증권 최선집행기준" 항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2. "자방"이란 투자자가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매수방향,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매도방향을 의미합니다.
13. "타방"이란 투자자가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매도방향,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매수방향을 의미합니다.
14. "잔량"이란 해당 호가의 단순 잔량을 의미합니다.

III.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1. 최선집행기준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증권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2)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나. 적용 대상 주문

- 1) 원칙적으로 최선집행기준(SOR)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 및 청약**에 적용됩니다.

* 신규매수, 신규매도, 정정, 신용매수, 매도상환, 대주매도, 대주상환 등

** 상장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청약)

- 2) 단, 투자자의 별도지시가 있거나 약관 및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 대상 집행시장

- 회사는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집행시장으로 합니다.

2. 유안타증권 최선집행기준

가. 최선집행기준 개요

SOR옵션	옵션값	최선집행기준
Taking주문	총금액, 가격, 수수료	총금액 > 가격 > 수수료
Making주문	매매체결가능성, 수수료	매매체결가능성 > 수수료
분할여부	분할, 미분할	분할
선호거래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Session 상태 선택	접속우선, 단일가우선	접속우선

나.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ing주문)

- 1) Taking주문의 우선순위는 [총금액 > 상품의 가격 > 수수료] 순 입니다.
- 2)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주문	매도주문
총비용	총비용이 작은 시장 $\sum((\text{체결예정가격} \times \text{주문수량}) + \text{거래비용})$	총대가가 큰 시장 $\sum((\text{체결예정가격} \times \text{주문수량}) - \text{거래비용})$
상품의 가격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우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수수료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매수수료가 낮은 시장을 우선적으로 판단	

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ing주문)

- 1) Making주문의 우선순위는 [체결가능성 > 수수료] 순 입니다.
- 2)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체결가능성	1. 자방 호가잔량이 작은 시장 2. 타방 최우선호가 가격이 유리한 시장 3. 타방 최우선호가 잔량이 많은 시장
수수료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매수수료가 낮은 시장을 우선적으로 판단

라. 분할여부

- 1)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ing주문)의 경우 복수시장으로 집행하는 것이 특정시장으로 집

행하는 것보다 투자자에 유리한 경우 각 시장으로 주문을 분할하여 전송합니다.

2)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ing주문)의 경우 분할하지 않습니다.

마. 선호거래소

- 정규시장 중에 총비용, 가격, 수수료, 체결가능성 등 조건이 대등하여 최선집행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합니다.

바. Session 상태 선택

- 1) 접속매매 시장과 단일가매매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접속매매가 가능한 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 2) 복수시장이 동시에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거래가능한 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참고] 장운영시간별 최선집행기준

Session	장운영시간(시작~종료)		NXT 장운영	KRX 장운영	집행시장
1	08:00:00	08:30:00	Pre마켓	휴장	NXT
2	08:30:00	08:50:00	Pre마켓	시가단일가	NXT
3	08:50:00	09:00:00	휴장	시가단일가	KRX
4	09:00:00	09:00:30	휴장	접속매매	KRX
5	09:00:30	15:20:00	Main마켓	접속매매	SOR
6	15:20:00	15:30:00	휴장	종가단일가	KRX
7	15:30:00	20:00:00	After마켓	휴장	NXT

3. 기타

가. 장 종료 시 주문처리

- 1) 한국거래소로 접수된 주문은 정규장 종료 후 투자자가 주문취소 등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8시 이후 자동으로 증거금 해지 처리됩니다.
- 2) 넥스트레이드로 접수된 주문은 정규장 종료 후 After마켓으로 이월됩니다.
- 3) SOR에 따라 주문을 분할처리 시 상기 1~2)에 따라 각각 처리됩니다.

나. 담보 및 자산평가

- 1) 신용 및 대출 종목의 담보 평가 시 한국거래소 정규장 종가를 적용합니다.
- 2) 일별 잔고조회 및 자산평가 시 한국거래소 정규장 종가를 적용합니다.

IV.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

1.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 가. 투자자의 별도지시가 있는 경우(☞ 상세내용은 V.별도지시 참고)
- 나. 일임계약 등 별도 약정이나 약관을 통하여 따로 정한 경우
- 다. 기타 적용 예외 매체 및 주문 방식(☞ 별첨 참고)
- 라. 반대매매
 - 1) 미수, 담보부족, 미상환 등 자동반대매매 처리 시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로 주문처리됩니다.
 - 2) 자동반대매매가 아닌 직원이 처리하는 수기반대매매의 경우에는 SOR로 주문을 처리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 가. 회사는 집행시장 또는 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나.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장애 시 처리
 - 1) 회사는 장애가 해소되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한국거래소(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 2) 또한 회사는 SOR시스템을 통해 이미 전송된 미체결 주문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주문은 SOR시스템 장애 해소 후에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3. 결과 책임 미귀속

- 가. 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이며,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합니다.
- 나. 회사가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그 결과가 최선의 결과 또는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합니다.

V. 별도지시

1. 별도지시란?

투자자가 별도로 주문집행방법을 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지시를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하여 주문을 처리합니다.

2. 별도지시 방법

가. 1회성 별도지시

- 1) 투자자는 주문 시마다 최선집행기준(SOR)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특정시장(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을 지정하여 주문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2) 지시방법
 - 가) 온라인 : 각 주문화면에서 특정시장 지정하여 주문접수
 - 나) 오프라인 : 직원에게 주문접수 시 별도지시

나. 별도지시 사전등록

- 1) 투자자는 별도지시 내용을 미리 등록하여 주문 시마다 해당 별도지시 내용에 따라 주문이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 3) 별도지시 유효기간 만료 시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1영업일 전을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만료사실을 최초 설명서 교부확인 시에 등록한 통보지(이메일, 휴대폰)로 통보합니다.
- 4)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일 전일로 유효기간이 변경 처리됩니다.

다. 별도지시 유의사항

- 1) 사전에 별도지시를 등록하였더라도 투자자는 기 등록된 별도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사전 등록된 별도지시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1회성 별도지시로 간주합니다.
- 2)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투자자의 서면 위임장에 주문대리인의 별도지시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문대리인도 별도지시가 가능합니다.

VI. 그 외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사항

1.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 가.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이 표시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설명서를 교부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주문수탁이 제한됩니다.
- 나. 설명서는 영업점,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교부받거나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보지

- 가. 투자자는 최선집행기준 개정, 별도지시 유효기간 만료, 그 외 매매와 관련한 중요사항 발생 시 이를 전달받을 통보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통보지는 이메일, 휴대폰 중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보지가 등록된 경우 최선집행기준 개정 시 해당 통보지로 발송하며, 수신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교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복수시장 참여거부 신청

- 가. 본 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복수시장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나, 복수시장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한국거래소로만 거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복수시장 참여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복수시장 참여거부는 2025. 3. 3까지만 가능합니다.
- 다. 복수시장 참여거부 중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복수시장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2025.3.3 이후에는 복수시장 참여신청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라. 관련 제도에 따라 복수시장 참여거부 시 넥스트레이드의 After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KRX단일가매매가 제한됩니다.

4.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 가. 회사는 3개월마다 체결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방식으로 최선집행기준(본 설명서의 내용 중 “III.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2. 유안타증권 최선집행기준”을 말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나. 회사는 점검 결과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합니다.
- 다. 최선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공표 시 회사는 영업점에 변경된 기준을 비치 또는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5. 최선집행기준 변경 시 업무처리

- 가. 회사의 최선집행기준(본 설명서의 목차 중 “III.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2. 유안타증권 최선집행기준”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표시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 설명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내용을 공지하며, 별도로 고객에게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 나. 회사는 변경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투자자가 최초 교부 확인 시에 등록한 통보지(이메일, 휴대폰)로 발송하며, 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투자자가 등록한 별도지시는 유효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선집행기준 변경 적용일 전일에 만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VII. 증빙자료(TCA) 제공

1. 증빙자료 요청

- 가. 투자자는 투자자의 주문이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별도지시, 복수시장 미참여, 일임계약 등 별도 약정이나 약관을 통하여 따로 정한 경우, 기타 적용 예외 매체 및 주문방식)에는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증빙자료 제공

가. 회사는 투자자가 증빙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이메일,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제공합니다.

나. 회사가 제공하는 증빙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 |
|---|
| ①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수·매도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 ② 매매시간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 ③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별첨] 기타 적용 예외 매체 및 주문 방식

1. 예약주문

예약주문은 각 시장(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개시 시간에 예약번호 순으로 주문이 전송되므로, 시장에 따라 주문 전송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지정한 주문 집행 시장으로 주문이 전송됩니다. 2025.3.4 이전 등록된 예약주문은 KRX로 주문을 전송합니다.

2. ARS / MyNet mini / 티레이더M 간편모드

ARS주문은 매체의 특성상 주문 시 투자자가 주문집행시장(SOR,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을 직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yNet mini, 티레이더M 간편모드는 간편한 시세 조회 및 주문을 하는 매체의 특성상 집행시장 직접 지정을 지원하지 않고, SOR을 통해 주문을 전송합니다.

3. DMA / 미니원장

DMA는 주문처리속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특수매체로서 SOR을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로 직접 주문을 전송합니다.

4. 외부 업체 개발지원 또는 운영 서비스(매체)

외부 업체의 개발지원이 필요하거나 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매체)는 외부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 시점부터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KRX 주문만 가능 : 서버자동주문, 신호포착, X-ray, RMS계좌(연계신용거래계좌), 증권플러스 등
- 집행시장 지정 주문만 가능 : 증권통, FIX주문(일반FIX, DMA FIX 포함) 등
- Pair Trading, 차익바스켓은(FIX) 양 거래소의 현물 호가가 상이하며, 베이스 조건을 맞출 수 없으

므로 한국거래소(KRX)로 처리

5. 주식특화 주문 및 서비스

주식특화 주문(클릭주문, 호가(탭)주문, 주식자동손절매(스탑로스), 주식그룹주문, 주식바스켓주문, 오더 바스켓 등) 및 주식특화서비스(티레이더, 프리미엄서비스, 주식모으기)는 과도한 호가 변동이 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거래소 시세만 제공/분석하고 주문 집행은 한국거래소(KRX)로 집행합니다. 향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가능종목 그리고 해당 서비스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 본 설명서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는 경우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 또는 고객센터(1588-2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